

Korean News Digest

Issue #11

(FW 2024)



인사말



안녕하세요.

혹독했던 더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중동에서 전해드리는 2024년 하반기 Korean News Digest입니다.

중동은 통상 풍부한 자원과 복잡한 법제 환경으로 잠재력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시장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UAE와 사우디를 중심으로 법제를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외국 자본의 유입에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 메가 프로젝트의 지속적 발주, 비석유 부문 산업 육성, 그리고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제2 중동 봄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중동은 건설, 에너지, 오일&가스 등 우리 기업의 전통적인 진출 부문뿐 아니라 하이테크놀로지, 블록체인, 게임, 헬스케어, 화장품 등 리테일 부문 등 더욱 다변화된 시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해외건설협회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실적'에 따르면, 북미와 아시아의 수주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중동 지역의 수주액은 100억 3,000만 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64.4%를 차지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견인했습니다. UAE가 추가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하반기에도 중동에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지난 5월 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대통령의 국민 방문과 방문 중 체결된 한-UAE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은 한국이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CEPA로, 양국 간 다양한 부문의 경제협력이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향후 10년에 걸쳐 90% 이상의 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다양한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UAE와의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UAE에 지역본부를 두고 인접국 및 아프리카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AI Tamimi & Company(이하 "알타미미")의 Korea Group(이하 "한국팀")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에 더욱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올해 "Tamimi Knowledge: 중동 지역 법률 업데이트"를 새롭게 론칭하여 MENA 지역 주요 국가들의 신규 법제, 법률 시장의 주요 동향, 현지 법원의 주요 판례들을 분기별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6년째 반기별로 간행해 온 Korean News Digest와 함께 우리 기업들에게 현지 진출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최전선의 사업 파트너이자 법률 자문사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타미미 한국팀 배상



오마르 변호사
Omar Omar

Partner, Head of Transport & Insurance, Head of Korea Group
o.omar@tamimi.com



하지원 변호사
Jiwon Ha

Senior Counsel
Korea Group Lead
j.ha@tamimi.com



송형민 변호사
Hyungmin (James) Song

Senior Associate
Korea Group
h.song@tamimi.com



Table of Content

- 04** Regulatory Dynamics and Legal Compliance
- 14** Economic Strategies and market Adaptation
- 20** Spotligh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Region
- 24** Sector-Specific Regulatory Advances and Market Dynamics
- 31** Judicial and Regulatory Landmarks Shaping Legal Practices
- 36** Al Tamimi & Company News



Regulatory Dynamics and Legal Compliance

Introduction of New Companies Law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23년 1월 19일부터 발효 중인 개정 회사법(이하 “회사법”)의 주요 조항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형태

회사법은 허용되는 회사 형태로서 Simplified Joint Stock Company(이하 “SJSC”)를 추가하였습니다. SJSC는 기존 Joint Stock Company의 변형된 형태로서 Joint Stock Company의 조항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회사의 설립, 경영, 주주총회 등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조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법은 Joint Venture에 대한 조항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사우디 내에서 더 이상 Joint Venture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예를 들어, 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Joint Venture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현행 회사법에 따라 (i) General Partnership, (ii) Limited Partnership, (iii) Joint Stock Company, (iv) Simplified Joint Stock Company, (v)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5가지 회사 형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회사(Professional Company)

프로페셔널 회사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은 회사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프로페셔널 회사는 원칙적으로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하며,

위에서 언급한 5가지 회사 형태의 하나로 설립이 됩니다. 외국인과 사우디인이 함께 프로페셔널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사우디인이 최소 25%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주주 간 협약

회사법은 공식적으로 주주 간 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회사 설립 이전 혹은 그 이후에 주주들 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1개 혹은 여러 개의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

LLC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회사 형태입니다. LLC의 설립을 위해서는 작성된 정관이 사우디 상공부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며, 상업등기소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경영의 측면에서, 1인 이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LLC의 주주들은 이사 퇴임 후 15일 이내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회사의 주주들 혹은 감사는 새로운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법은 법정 유보금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유보금을 적립할지 여부 및 유보금의 액수는 주주들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주주들은 유보금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할 수도 있고 별도의 결의를 통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법은 주주들의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및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을 정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은 회사 주식 전부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있는 경우에 다수주주가 소수주주들로 하여금 다수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회사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은 다수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소수주주의 주식도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기존 회사법은 회사의 손실이 자본금의 50%에 이른 경우에 이사들은 이를 인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손실을 법인등기부에 등록하고,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존속 혹은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이사들은 더 이상 그 손실을 법인등기부에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사들은 자본금의 50%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인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법은 회사의 정관에서 주주간의 분쟁해결절차(예를 들어, 중재절차의 이용)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Dawn of the Data Centres: Data Centre Licensing in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의 데이터센터 라이선스 규정

2023년 8월, 사우디아라비아 통신, 우주 및 기술 위원회(이하 "CST")는 데이터센터 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개선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규제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 적용 범위

먼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면, 도소매 서비스 공급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때 서비스 공급자란 데이터센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업체와 해당 데이터센터에 대해 직접적 또는 실질적 통제권을 가진 기관이 해당됩니다. 서비스는 서버,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장비를 호스팅 등 고객에게 공간, 전력 및 냉각을 제공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서비스 공급자는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모든 단계 동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의할 사항은 서비스 공급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하는 경우 CST에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로 추가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록

등록은 3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등록 카테고리에 따라 각 데이터센터를 CST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적격 카테고리:** 신규 데이터센터를 개발할 업체에 해당되며(즉, 운영 전), 적격 카테고리에 등록되었던 업체는 데이터센터 완공 후 카테고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제한된 카테고리:** 기존 업체들 중(신규 업체는 불가), Tier 1 인증을 보유했거나, Tier 설계 인증만을 보유했거나, 보유한 인증이 없거나, 혹은 표준 또는 고급 카테고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해당됩니다.
- **표준 카테고리:** CST가 공인한 Tier II 건설 인증을 보유한 업체가 해당됩니다. 표준 데이터센터는

통신사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에너지 소비, 탄소 배출 및 전자 폐기물 감소를 위한 에너지 관리 및 지속 가능성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고급 카테고리:** CST가 공인한 Tier III 건설 인증을 보유한 업체를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통신사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에너지 관리 및 지속 가능성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된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

서비스 공급자는 등록 의무 이외에도 다음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Commercial Registration)** 을 유지하고, 관련 필수 인증들을 유효하게 관리
-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고, 승인된 자만 시설에 출입**
-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미리 제공**
- **고객과 계약 체결 시, 서비스계약(Service Level Agreement, 이하 "SLA")를 제공**
- **SLA, 비즈니스 연속성, 재해복구, 리스크 관리에 대한 CST의 지침과 가이드라인 준수**
-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고객에게 공지**
- **영구적 혹은 잠정적으로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15일 내에 통지하고,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서비스 종료까지 최소 3개월간 서비스 제공**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규정 7.11조에 의거 사우디 법이 준거법이며, 3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우디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분쟁 발생 후 30일 동안 분쟁을 해결하도록 대안적 수단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나,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변경하거나 대안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우디 법원이 기술 분쟁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The new UAE Federal Procurement Law: What's new?

신규 UAE 연방 조달법

UAE는 최근 신규 연방 조달법(이하 "신규 조달법")을 제정했습니다. 신규 조달법은 연방 조달과 관련하여 규제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 조달 시스템을 강화하며, 공급업체 간 평등과 차별 금지를 보장하고, 청렴과 투명성을 촉진하며, 조달 및 계약 과정에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조달법의 주된 특징과 조항들 중 일부를 기존 법과 비교한 표입니다.

특징/조항	기존법	신규조달법
법적 지위	재무부 장관이 발의한 기존 내각 결의는 폐지되었으나, 연방 정부의 디지털 조달 정책에 대한 조치는 유효함.	연방의회와 내각의 승인 후 UAE 대통령이 발령한 연방법.
법 적용 범위	연방 부처, 독립 연방 기관, 당국 및 기관을 포함한 연방 기관의 조달, 공급 및 작업 수행에 적용됨.	특정 예외 사항을 제외한 연방 기관의 모든 조달 및 계약 활동에 적용됨.
예외사항	해당 결의안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는 국가 안보, 국방, 정보기관 및 긴급 상황과 관련된 조달 활동, 그리고 중앙 은행, 국가 감사 기관, 그리고 연방 대법원의 조달이 포함됨.	법률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는 국가 안보, 국방, 정보기관 및 긴급 상황과 관련된 조달 활동, 그리고 중앙 은행, 국가 감사 기관, 연방 대법원, 연방 사법 기관, 연방 원자력 규제 기관에 의한 조달이 포함됨.
조달 시스템	직접 수여 및 소액 지출을 제외한 모든 조달 작업에 전자 조달 시스템 사용이 요구됨.	직접 수여 및 소액 지출을 제외한 모든 조달 및 계약 활동에 조달 시스템의 사용이 요구되며, 시스템 장애 또는 사용 불가 시엔 다른 전자 수단 사용도 허용함.
구매 원칙	투명성, 경쟁, 공정성, 평등성, 공급업체 정보 보호 원칙을 명시하며, 공급업체 또는 연방 기관 직원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모를 금지함.	이전 결의안과 동일한 원칙하에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방 기관이 조달 및 계약 활동에서 지속 가능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수여 규정 및 통제 조항	평가 기준, 수여 위원회, 수여 결정, 수여 통지, 계약 체결 및 성과 보증과 같은 수여 조항과 통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결의안과 동일하게 수여 및 통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입찰 보증금, 입찰 개봉, 입찰 철회, 입찰 정정, 입찰 취소, 입찰 거부, 입찰 수락 및 계약 수정 조항이 추가됨.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Transfer Pricing Guide: Key features

UAE 과세관청(Federal Tax Authority, 이하 "FTA")는 2022년 연방 법령 47호 Taxation of Corporations and Business(이하 "법인세법")을 발표한 이후([Korea News Digest 8호 참조](#)) 관련된 자세한 실무 지침서를 발간해 왔으며, 2023년 10월에는 이전가격 가이드(TP Guide)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전가격 가이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인세법에 따른 이전가격 적용 의도와 정상가격 거래 범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이전가격 가이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기업 및 세무 행정 지침(이하 "OECD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결과로, UAE의 이전가격 제도를 국제 표준에 맞춘 것입니다.

과세 대상자는 이전가격 산출 방법이나 특정 규칙의 적용을 정당화하는 증빙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체 이전가격 가이드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전가격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상가격 거래 원칙

이전가격 가이드에서는 정상가격 거래 원칙이 특수 관계인(Related Parties) 또는 관계인(Connected Persons) 간의 거래 및 계약 금액이 독립적인 제3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맺은 금액과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OECD 가이드라인과 일치합니다. 이전가격 가이드가 국내 및 국경 간 지배된(Controlled) 거래에 모두 정상가격 거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특수 관계인

이전가격 가이드는 법인세법 제36조 및 35조에 언급된 관계인(connected persons)과 특수 관계인(related parties)의 정의를 확장합니다. 이전가격 가이드는 관계인과 특수 관계인 개념을 적용하여, 납세자가 UAE 사업 운영 시 이전가격을 목적인 '지배(control)' 행사 여부를 평가하는 다양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예시를 통해 '지배'를 결정하는 요소가 단순히 50% 소유 지분 기준에만 제한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배'는 한 인물이 다른

인 물 에 대 해 '중 대 한 영 향 력' (significant influence)을 행사하는 경우를 통해 입증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를 기반한 중대한 영향력(예: 차입자 총 자본의 50% 이상), 또는
- 이익 분배 권리에 따른 중대한 영향력(예: 이익의 50%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로열티 계약) 등이 '중대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예시입니다.

과세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식별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통해 관계인 또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가격 거래 원칙의 적용

이전가격 가이드는 지배 거래(controlled transaction)에 정상가격 거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3단계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 1) 특수 관계인, 관계인, 관련 거래 및 상황을 식별하고 이전가격을 분석(comparability analysis) 합니다.
- 2) 가장 적절한 이전가격 산출 방법을 선택합니다.
- 3) 정상가격을 결정합니다.

이전가격 분석(comparability analysis)은 정상가격 거래 원칙 적용의 핵심 사항입니다. 이는 지배 거래를 비교 가능한 비지배 거래와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전가격 가이드는 지배 거래의 '정확한 구분'(accurate delineation)을 강조합니다. 정확한 구분은 각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감수한 위험 및 사용한 자산을 세분화하여 계약 형태보다 실제 행위를 기반으로 지배 거래를 인식합니다.

이전가격 산출 방법과 관련하여, 이전가격 가이드는 OECD 가이드라인과 법인세법 제34조(3)에 명시된 다섯 가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이전가격 방법을 언급합니다. 이전가격 가이드는 다섯 가지 방법 중 어느 것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정상가격 거래 원칙 적용을 위해 '다른 방법(Other methods)을 고려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FTA는 가능한 경우 이전가격 산출 방법을 거래 수준(transactional level)에서 적용할 것을 권장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각 관련 거래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전가격 가이드는 산출 방법이 집합적(aggreated)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수익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회사 전체에 거래 순이익률 방법(Net Margin Method)을 적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상가격 거래와 관련하여, FTA는 산술 평균이나 중앙값과 같은 통계적 측정보다 사분위수 범위가 변동성을 측정하는데 더 적절한 접근 방식이라고 제안합니다. 법인세법 제34조(7)에 따르면, 정상가격 범위 내의 모든 지점이 과세 대상자의 지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허용됩니다. 더불어, 이전가격 가이드는 극단적인 결과, 즉 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사들이 비교 목록에 포함될지 제외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비지배 거래 또는 회사는 지배 거래와 비교 가능한지 결정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해야 합니다. 손실이 정상적인 사업 조건을 반영하지 않거나 제3자의 손실이 과세 대상자가 지배 거래에서 감수하는 위험 수준과 비교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보고 있는 거래 또는 회사는 비교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과세 대상자가 이전가격 분석(comparative analysis)을 수행할 시, 이전가격 가이드는 국내 비교 대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는 국내 비교 대상이 일반적으로 외국 비교 대상에 비해 시장 및 경제적 상황 측면에서 더 높은 비교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내 수준에서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과세 대상자는 지역적 또는 글로벌 비교 대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는 납세자가 지역 벤치마킹 연구를 수행하고 그룹 수준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존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이전가격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과세 대상자는 지배 거래와 관련하여 시기적절한 이전가격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가이드는 문서화 접근 방식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이전가격 공시 양식

특수 관계인 또는 관계인과 국내 또는 국제 거래를 하는 모든 과세 대상자는 세금 신고서와 함께(즉, 해당 세무 기간 종료 후 9개월 이내) 이전가격 공시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가이드는 이 공시 양식에 대한 중요성 기준(Materiality)를 제안했으나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FTA는 샘플 양식이 FTA 웹사이트에서 제공될 것이며, 과세 대상자가 지배 거래의 성격, 지배 거래의 가치, 특수 관계인의 세부 사항 및 지배 거래의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이전가격 산출 방법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AED 3.15 billion(한화 약 1조 2천억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하 "MNE") 그룹의 구성 회사 또는 해당 세무 연도의 매출이 AED 200 million(한화 약 750억 원) 이상인 과세 대상자는 마스터 파일(통합기업 보고서)과 로컬 파일(개별기업 보고서)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FTA에서 규정한 사항들은 OECD 가이드라인의 제5장과 일치합니다.

UAE에 본사를 둔 기업의 구성원이지만 다국적기업의 그룹이 아닌 경우(즉, UAE 외부에 사업장이 없는 그룹)은 마스터 파일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준에 따라 로컬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스터 파일에는 그룹의 조직구조와 사업 내용이 담겨야 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 내용, 전반적인 이전가격 정책, 그리고 소득과 경제 활동의 배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반면, 로컬 파일에는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을 개별 회사 단위로 식별하고 정상가격 거래 활동인지 평가해야 합니다.

마스터 파일 또는 로컬 파일 제출 대상이 아닌 일반 납세자도 여전히 특수 관계인 또는 관계인과의 거래가 정상가격임을 입증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FTA는 모든 납세자로부터 관련 문서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예시로는 기능 분석(Functional Analysis), 벤치마킹 연구, 회사 간 계약, 회의록, 의사 결정 문서, 이메일, 청구서, 이전가격 추정 작업 문서 등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FTA에 의해 30일 이내에 요청될 수 있으며, FTA의 명령에 따라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FTA는 문서가 지배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유지되거나 또는 지배 거래가 이루어진 세무 기간에 대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과세 대상자가 문서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3.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CbCR)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소득 배분, 국가별 납부세액,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화된 보고서입니다. 또한, 재무 정보가 공개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각 구성 회사를 식별하며 세무 관할권 및 주요 경제 활동 사항 등도 포함됩니다. 국가별 보고서는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AED 3.15 billion(한화 약 1조 2천억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UAE에 본사를 둔 경우 해당되며, 회계 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별 보고서의 통지서(Notification)은 신고하는 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다국적 그룹의 회계 연도 마지막 날 안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별 보고서 관련 규정은 2020년 제44호 내각 결의안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OECD 가이드라인 제5장에 첨부된 표준 양식을 따릅니다.

금융 거래

이전가격 가이드는 OECD 가이드라인의 제10장 금융거래 내용을 준수합니다.

이전가격 가이드는 OECD 가이드라인 제7장과 일치하는 가이드는 기업 내부 금융 거래의 많은 요소를 다루며, 정상가격 거래 원칙이 기업 내부 금융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적절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어떠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전가격 가이드는 기업 내부 대출 및 이러한 계약의 정상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이전가격 가이드는 재무 활동, 현금 풀링(Cash pooling), 헤징(Hedging), 금융 보증 및 사내 보험 계약에 대한 이전가격의 영향을 언급합니다.

기업 내부 서비스

기업 내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전가격 관점에서 기업 내부 서비스와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내부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여부
- 기업 내부 서비스가 정상가격 거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첫 번째 사항은 이른바 “이익 테스트(Benefit

test)”로써 서비스 수혜자가 제공된 서비스로부터 실제 이익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이와 더불어, 납세자는 주주 비용, 중복 비용 등과 같은 특정 유형의 비용에 대한 이전가격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비용 범위가 결정되면, 납세자는 적절한 배분과 비용의 정상가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자는 FTA의 요청에 따라 제출할 증빙 문서를 준비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서에는 제공된 기업 내부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설명, 수혜자의 신원, 수혜 받은 혜택의 요약, 가격을 결정하고 계산하는 데 사용된 접근 방식, 비용 배분 기준에 대한 당위성, 비용과 서비스의 상호 관련성, 이윤(mark-up)의 가산 여부에 대한 증빙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각 세금 기간 동안의 이전가격 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법인세법 제24조(4)에 따르면, 고정 사업장(이하 “PE”)의 소득 및 관련 지출을 결정할 때, 거주자와 PE는 별개의 독립적인 실체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독립 기업 원칙(Separate entity approach)”이라고 합니다. 정상가격 거래 원칙은 고정 사업장을 그룹의 다른 부분이나 고정 사업장이 속한 본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상가격 거래 원칙에 따라, FTA는 과세 대상자가 고정 사업장에 적절한 금액의 수익과 관련 비용을 배분할 것을 기대합니다. PE와 본사 간의 이익을 정확하게 배분하기 위해 두 단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 본사와 PE가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한 기능 분석(functional analysis)
- 본사와 PE 간의 거래에 대한 대가 결정

결과적으로, PE 중 하나가 특수 관계인 또는 관계인 거래에 포함될 경우, 정상가격 거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입증 책임

이전가격 가이드는 입증 책임이 과세 대상자에게 있으며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FTA에 적시에 제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무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이 FTA로 전환되므로, 과세 대상자는 이전가격 문서를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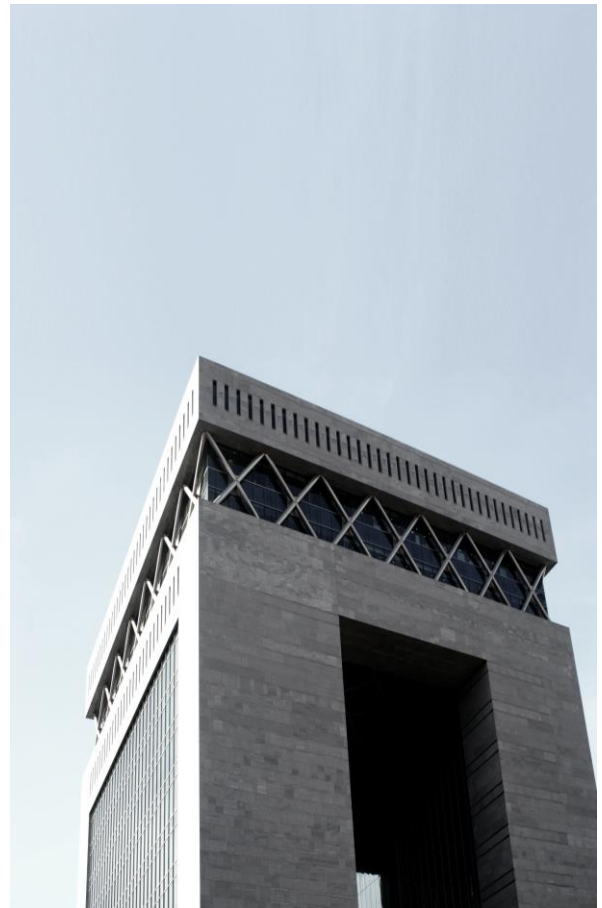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The DIFC Venture Studio Regulations 2023: A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Innovative Start-ups

최근 DIFC는 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자 벤처 스튜디오 규정(Venture Studio Regulations 2023; 이하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2023년 4월 26일 발효한 규정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기업가와 투자자가 어떻게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 규정은 벤처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간소화된 과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벤처 스튜디오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DIFC에서 설립 및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벤처 스튜디오는 스타트업 초기 단계부터 자금, 기술, 전문 지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등기소(Registrar of Companies)의 승인을 받아 최대 20개의 스타트업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규정은 벤처 스튜디오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적격 지원자(Qualifying Applicant)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적격 지원자란, 벤처 육성(venture building)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하기에 충분한 경험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DIFC 등기소가 판단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적격 지원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DIFC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벤처 스튜디오는 자신이 지원하는 스타트업과 스폰서십 계약서(Venture Sponsorship Agreement)를 각 체결한 후 DIFC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각 벤처 육성 업무에 관한 등기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소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24개월간 유효합니다.
- 벤처 스튜디오를 설립하는 투자자는 세계적인 수준의 DIFC 인프라 및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고, 엔젤 투자자, VC,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등 다양한 원천을 통해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는 벤처 스튜디오의 지원을 받아 DIFC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Recent Amendments to the DIFC Employment Law

DIFC 근로기준법 주요개정사항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DIFC)는 DIFC Law No. 1 of 2024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DIFC 근로기준법(DIFC Law No. 2 of 2019)의 개정안으로,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Qualifying Schemes(적격 퇴직 연금제도, 이하 "연금제도")에 대한 기여금 수정 및 제재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제도 도입입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DIFC 내 고용주는 United Arab Emirates/Gulf Cooperation Council(UAE/GCC) 국적 근로자들을 위해 연금제도에 추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연금 상한선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소 추가 기여금은 AED 1,000이며, 미준수 시 해당 근로자 당 최대 USD 2,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제재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관련 지침도 도입되었습니다. 제재 대상자란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UAE 연방내각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제재 대상 목록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고용주는 제재가 해제되거나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제재 대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제재 대상자가 아니었더라면 해당 근로자가 연금제도로부터 받았을 혜택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들은 DIFC 내 보다 공정한 고용 환경 및 법규 준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용주들은 개정된 법적 체계 아래 UAE/GCC 국적 근로자들이 개선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평가하고, 제재 대상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할 것을 촉구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Economic Strategies and Market Adaptation

Beyond Borders:

The UAE's Dynamic Approach to Free Trade Agreements and Export Growth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은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줄여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합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 양자 및 다자간 FTA를 체결하고 협상 중이며, 이를 통해 UAE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FTA는 수출업자에게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제품과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간 거래되는 재화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관세우대혜택을 제공합니다.

UAE는 FTA를 통해 수출을 장려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규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FTA는 원산지 규정 준수, 필요한 허가 및 증명서 발급과 같은 관련 규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UAE의 FTA: 다양하고 역동적인 포트폴리오

걸프 협력 위원회(GCC)의 회원국인 UAE는 GCC 프레임워크 내에서 모든 FTA를 운용합니다. GCC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로 구성된 이 지역의 정치 및 경제 블록으로, GCC 회원국은 경제 협정(GCC-Economic Agreement, 이하 "EA")을 체결하여 재화가 관세 없이 GCC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GCC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GCC-EFTA)와 싱가포르(GCC-Singapore)와의 FTA를 각각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UAE는 이들 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UAE는 지부티, 모리타니아, 소말리아, 코모로 연방을 제외한 모든 아랍 국가가 포함된 지역 FTA인 아랍 Greater Arab Free Trade Area(GAFTA) 회원국이며, UAE는 최근 여러 국가와 양자간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UAE의 FTA: 수출업자를 위한 기회와 실용적인 팁

UAE의 FTA는 수출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제품과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품이 UAE에서 가공되고 FTA 체결국가에서 현지 가치가 일정 비율 발생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관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은 다음과 같은 현지 가치 비율이 발생하는 경우 우대 조치를 받고 0%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 GCC-EA 및 GAFTA는 40%
- GCC-EFTA는 60%
- GCC- Singapore FTA는 35%
- UAE-India FTA는 45%

인도와 UAE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UAE-India FTA")에는 제품별 원산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외 보석 혹은 준보석으로 세팅된 금 장신구"는 Free On Board(FOB) 6%의 부가가치를 달성해야 합니다. 양측은 또한 수리 또는 수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필수적인 복원을 제외한 어떠한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는 한,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UAE 역내 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한 생산 시설은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EFTA), 인도 또는 싱가포르 등과 체결한 FTA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나, Ministry of Economy(MOE)로부터 Producer Qualification Certificate(Producer QC) 와 Product Qualification Certificate(Product QC)를 받아야만 해당 FTA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유무역지대의 생산 공장은 GAFTA 및 GCC-EA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자유무역지대의 생산자를 이 두 협정에 적격하다고 MOE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UAE의

수출업자는 UAE의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MOE로부터 Certificate of Origin(CoO)를 받아야 합니다. UAE의 FTA는 수출업자가 무역 및 투자 목표를 달성하도록 기회를 창출하는 강력한 도구이나, 원산지 규정, 관련 인허가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수출업자는 관련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관련된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규제 프레임워크는 자주 변화하며, 이는 무역 역학과 적격성 기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최신 정보를 모니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Storing the Future: Data Centre Financing in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내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데이터센터 금융 기법의 활용은 최근 UAE가 기술과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본고에서는 UAE 내에서의 데이터센터 파이낸싱의 구조와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센터 파이낸싱은 이해관계자의 고유한 요구에 맞춘 다양한 구조를 가능하도록 합니다. 구조의 선택은 투자자 역동, 운영자의 역할, 구매 계약 및 자금조달자가 갖는 리스크 등을 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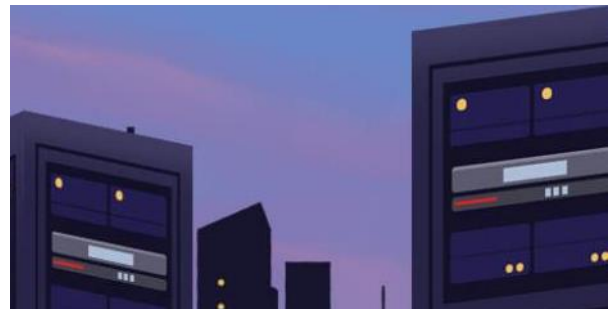
- 기업 부채 파이낸싱 모델: 본 프레임워크는 차입자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전통적인 부채 구조로, 주로 데이터센터 시설의 개발, 확장 또는 인수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거래의 가격은 프로젝트별이 아닌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전통적인 접근법은 많은 운영자들이 신뢰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 프로젝트 파이낸스 모델: 보다 복잡한 구조인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대출자가 비소구 방식으로 프로젝트의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신용을 확장하는 방식이며, 대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 회사의 자산을 담보합니다.
- 부동산 파이낸싱 모델: UAE 시장에서는 데이터센터 자금조달이 신규 부동산 자산 등급으로 인식되어 부동산 자금 모델에 따라 구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델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모델과 유사하게 대출자가 주로 부동산 가치와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며, 데이터센터 운영자에게 계약을 가하는 대신 현금 흐름과 채무자 그룹의 사업 운영에 대해 용도 지정 조치를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 세일-리스백 방식: 이 구조는 데이터센터의 기존 자산을 금융기관(대주단)에게 매도하고, 이후 임대받는 방식으로 자산을 활용하는 계약입니다.

데이터센터 파이낸싱의 주요 특징

데이터센터 파이낸싱으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부동산 파이낸스 모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된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 규모 조정: 부채 규모는 재무 모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지출의 20% - 30% 이상은 주주 자본으로 충당하며, 남은 지출은 부채 금융을 통해 조달됩니다. 오프테이크 계약과 차주의 신용 및 실적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담보 패키지: 데이터센터 자산, 수익, 주요 계약,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토지 권리, 보험, 차주 혹은 운영사의 주식 등이 일반적으로 담보 자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차주의 지불 의무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스폰서가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소구 프로젝트 파이낸싱과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 부동산: UAE의 각 토후국은 자국 및 외국법인에 대해 소유권, 임대권,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권리 등록을 규제하는 고유한 부동산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이터센터의 소재지와 차주가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 보유한 권리에 따라 차주가 어떤 담보자산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오프테이크 구매계약: 오프테이크계약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가장 주요한 수익원입니다. 이 계약은 임대 혹은 콜로케이션 계약 형태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 대주단은 일반적으로 기술 및 법적 자문단을 동원해 이런 구매계약의 잠재적 위험을 감별하고 해결하며, 데이터센터의 최소 계약 용량 이용률이나, 자금 조달의 전제 조건으로 추가 구매 계약의 필요 여부와 같은 조건까지 명시하기도 합니다.
- 만기기간 및 대출 상환: 대출 기간은 일반적으로 10~12년으로 이루어지며, 건설 기간 중에는 차주가 원금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유예 기간은 프로젝트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완공한 후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영합니다. 상환은 기간 내 분할되거나, 만기 때 일시 상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무약정(Financial Covenant): 데이터센터 자금 조달 시 대주단은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을 부과하여 대출 상환과 관련한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적절히 평가합니다.

UAE에서의 데이터센터 금융 조달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지역 및 국가별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들의 데이터 현지화가 계속됨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센터의 설립과 기존 데이터센터의 서버들의 증설에 대한 수요는 이미 충분히 확보된 데 반하여, 아직 역내 데이터센터 금융 조달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성숙함에 따라, 더욱 발전된 파이낸싱 모델이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속 가능한 데이터센터 중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Limitations on using USD currency in Iraq

2022년 하반기, 이라크는 미 달러화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심각한 금융 불안정을 겪었습니다. 당시 이라크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aq, 이하 "CBI")의 공식 환율은 1달러당 1,470 이라크 디나르(IQD)였으나, 연말에는 현지 시장에서 1달러당 1,800 IQD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라크 정부는 2023년 초 미 달러화 사용에 대한 암시장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3년 2월 6일, 이라크 정부는 공식 환율을 1,320 IQD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고, CBI는 2023년 2월 8일부터 이를 시행하여 자국 통화 사용을 촉진하려 했습니다. 이후 CBI와 각료 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정부 및 비정부 계약, 민간 부문 급여에 대한 미 달러 사용을 제한하는 여러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 계약

2023년 1월 10일, 내각은 모든 정부 거래와 서비스를 CBI가 수시로 결정하는 공식 환율에 따라 이라크 디나르(IQD)로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 달러화로 지불하기로 한 정부 계약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3년 9월 26일, 내각은 모든 정부 계약이 IQD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외부 대출 계약 등 예외 사항은 2023년 11월 27일 자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18일, 내각은 미 달러로 체결된 정부 계약에 대한 보증 및 신용장 지급을 1,320 IQD의 공식 환율에 따라 IQD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간 부문 계약

2023년 1월 10일자 내각 결정에 따라, 모든 민간 부문 기업도 미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고, CBI가 발표한 공식 환율을 채택하여 거래와 계약을 IQD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국가 보안 담당자들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약서를 받았으며, 이 서약서는 민간 부문 기업들이 미 달러로 거래를 수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원 급여

2023년 4월 18일자 내각 결정에 따라 민간 부문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미 달러 대신 IQD로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 8월 17일자 CBI 지침 제9/3/463호(CBI's instructions No. 9/3/463)에 따라 외부 은행 송금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라크 은행들은 이 지침을 위반하며 송금액을 IQD로 지급하기 시작했고, CBI는 모든 은행에 미 달러 예금을 미 달러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행했으며, 외부 송금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

내각과 CBI는 이라크 통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적 결정들은 이라크 내 금융 안정성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미 달러화로 지급해야 하는 기존 계약 의무와 청구 문제는 여전히 논의 중이며, 이는 관련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Spotligh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Region

Impact of the Saudi Civil Transactions Law on Construction Contracts

사우디아라비아의 Civil Transaction Law(2023년 12월 16일 발효, 이하 "사우디민법")은 건설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및 분쟁 해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사우디민법이 건설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급인의 의무

사우디민법 463-467조는 수급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공사계약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감리 및 설계계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1) 원자재

사우디민법 463조에 따라, 수급인은, 원자재를 자신이 구매하였는지 아니면 발주처를 통해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합니다.

2) 비용

사우디민법 464조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장비의 구매, 조달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계약의 이행

사우디민법 465조는 수급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그 기간에 관한 정함이 없을 경우 수급인은 업계의 스탠다드에 따른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계약위반

466조는 수급인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인의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 위반을 시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계약 위반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급인의 비용으로 새로운 수급인을 찾아 계약의 이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467조는 손해를 계산하고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467조는 발주자가 계약 목적물의 인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계약 목적물의 인수 전에 예상할 수 없던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자의 의무

사우디민법 468-472조는 발주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계약 목적물의 인수

사우디민법 468조는 수급인이 업무를 완료하고 계약 목적물을 발주자의 처분하에 두었다면, 발주자는 즉시 이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계약 목적물이 소멸할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대금의 지급

사우디민법 469조는 발주자의 대금지급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주자는 계약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계약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목적물이 분할해서 인수되는 경우에는 인수된 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물량 변경

물량 변경은 건설계약에서 분쟁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사우디민법 470조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계약에 있어서의 물량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470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기존 설계에 따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물량 증가가 필요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대금의 증액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급인은 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의 증액

사우디민법 471조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한 설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총액 계약 형태의 건설계약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사대금의 증액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그 설계 변경이 발주자의 과실에 기하거나 발주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수급인은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472조는 계약에서 수급인이 청구할 수 있는 대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유사한 업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사우디민법 473조는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인은 법률, 계약 등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474조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474조에 따르면,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지급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만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완료

475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은 완료됩니다. 다만, 476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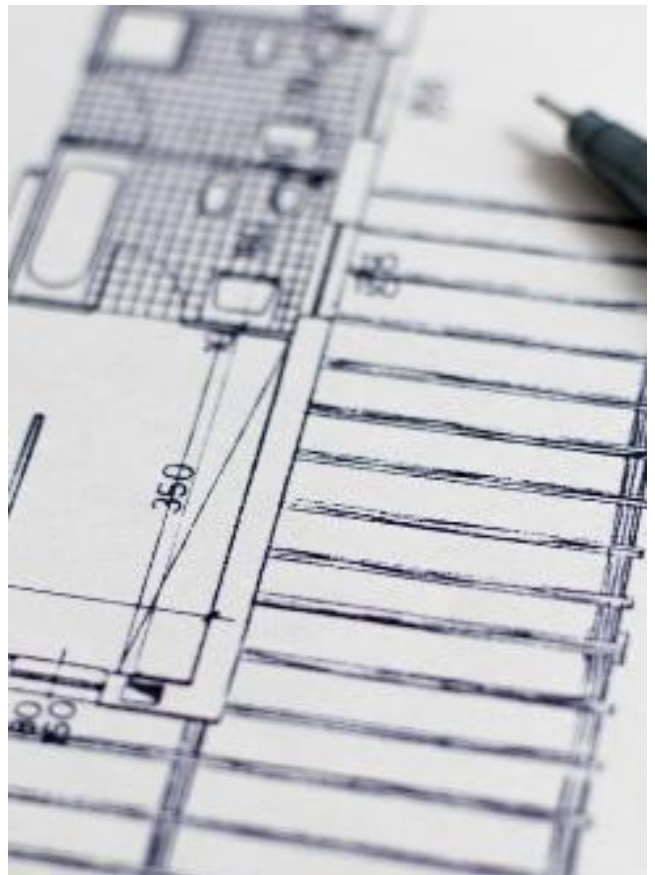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77조는 수급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완성된 업무에 대한 대금 및 미완성된 업무와 관련하여 투입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의 예정

사우디민법 178, 179조는 손해배상금의 예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은 사전에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위 조항들은 법원이 예정된 손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민법은 발주자 및 수급인의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원칙들을 성문화함으로써 건설계약에 있어 법적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EPC contracting in the power sector – some practical considerations

GCC국가에서 전력/에너지 플랜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EPC 계약의 구조는 시공사가 기한에 맞춰 턴키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발주처는 완성된 목적물을 검사한 뒤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견 간단해보일 수 있으나 실무상으론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곤 합니다.

본고에서는 EPC 프로젝트가 난관에 봉착하는 몇가지 이유와 잠재적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 내용의 불분명성: EPC계약은 수주자가 발주자에게 프로젝트 목적물(output)을 전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수주자가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물을 전달할 경우, 수주자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수주자가 제작한 시설이 개별적으로는 계약내용에 부합하나 시설들끼리의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수주자에게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또는 발주자가 수행해야 하는 검사의 구체적 내용 등이 계약서상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주자와 발주자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금 및 현금흐름: 최저가 응찰자와 후지급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한 선택지일 수도 있으나 이에 따라 수주자의 현금흐름이 악화돼 수주자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공사 중인 목적물의 품질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하청업체 및 공급업체 역시 '수주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을 때 수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주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는 곧 공급망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이와 같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EPC 계약서에 수주자와 하도급업체 및 공급업체 간 자금흐름을 발주자가 감사할 권리 또는 필요시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할 권리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위험 배분: EPC 계약의 본질상 수주자가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할 것이나, 수주자가 FEED(설계 초안)이나 현장의 지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모든 위험이 수주자에게 귀속되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주자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현금흐름에 지장을 주어 프로젝트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컨대 EPC 계약 체결에 앞서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의 이행: 수주자 또는 발주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의 원인을 최대한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수주자가 EPC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에도 시의적절한 대응은 필수적입니다. 효과적인 EPC 계약은 계약 존속 중 수주자의 업무 범위를 조정, 계약 해지 등에 관해 규율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프로젝트를 다른 수주자가 완성하게 되었다면 신규 수주자에 대한 기존 수주자의 의무 등에 관해서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Sector-Specific Regulatory Advances and Market Dynamics

Mergers And Acquisitions In The EV Charging Infrastructure Sector

일반적으로 산유국이 많은 중동에서는 전기차(EV)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UAE에서의 전기차 부문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특히 UAE는 국가차원에서 에너지원천을 다양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며, 글로벌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합니다.

본고에서는 UAE 내 EV 충전소와 관련한 인수합병(이하 "M&A")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고려사항과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률규제환경

UAE에는 연방 차원의 EV 충전소 관련 규제는 없는 반면, 각 토후국은 재량에 따라 EV 충전 인프라의 개발 및 운영을 장려하고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각각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에 맞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자체 지침, 기준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 두바이 최고 에너지 위원회(Supreme Council of Energy)는 지속 가능한 교통 솔루션으로서 전기차를 장려하기 위해 '두바이 그린 모빌리티 이니셔티브'를 시작했고 2017년에는 EV 충전소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2017년 제1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공공 또는 민간을 불문하고 모든 조직과 개발자가 전기차 충전 시설의 설립, 설치, 운영 또는 유지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두바이 전기 및 수자원청(이하 "DEWA")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지침은 두바이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탄소발자국'을 보유하도록 하는 '두바이 청정 에너지 전략 2050'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이행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DEWA는 대중에게 전기차 충전소를 개방하고

비상업용 전기차 사용자에게는 2021년 말까지 무료 충전을 제공하는 정책도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청(이하 "RTA")은 전기차 소유자에게 무료 주차, 전기차 등록비 할인, 살릭(두바이의 도로 통행료 시스템) 태그 비용 면제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부다비 역시 EV 성장 및 충전소 배치 확장을 위해 2018년, 아부다비 에너지부(이하 "ADDOE")를 통해 아부다비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관한 규제 정책을 발표했으며, 정부와 관련부처들을 통해 각종 세제 혜택 및 보조금은 물론, 녹색 기술에 투자하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UAE의 EV 충전소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EV 충전 시장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왔고, 이는 잠재투자자와 인수자가 이 부문에 진입하거나 확장하는데 큰 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EV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정부의 역할

UAE의 다른 인프라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EV 충전 인프라의 개발 및 확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기에는 토지 제공 및 EV 충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간소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부 내 특정 부서 또는 기관이 이러한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로서 활동하며, 종종 합작 투자를 통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구하며,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정부는 민간 기업의 기술 전문 지식과 상업적 감각을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수익성 있는 실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직접 소유하에 있으므로 독립적인 평가를 거쳐 현물 출자 자본으로 합작 투자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부문 파트너는 그들의 자본 기여의 평가에 따라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EV 충전 인프라의 배포 및 관리를 위해 컨소시엄 또는 합작 회사가 종종 설립되는데, 이들은 계약 입찰과 함께 정부의 합작 투자 파트너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협력적 접근 방식은 인프라 투자자를 유치하고 기술 공급에서 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다양한 측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M&A 고려사항 및 문제점

예비 규제 고려사항

UAE의 2021년 연방법령 제32호 상업 회사법에 따라 EV 충전소 및 시스템 관련 사업은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은 현지인 지분 요건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UAE에서는 특정 시장 점유율 임계값을 충족하거나 UAE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M&A 거래는 완료 전에 경제부 경쟁 관련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제안된 거래를 승인, 반대 또는 조건을 부과할 권한이 있으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이나 기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사

실사는 M&A 거래에서 중요한 단계로, 당사자가 대상 비즈니스와 관련된 자산, 부채,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EV 충전소와 관련한 실사단계에서 파악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충전소의 소유 및 운영 및 토지 소유자, 전기 공급자, 네트워크 운영자, 서비스 제공자 및 고객과의 계약 관계
- 계약상의 의무 이행 및 계약 위반 또는 해지로 인한 잠재적 부채 및 분쟁 평가
- 계획 및 건축 허가, 환경 및 안전 기준,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라이선스 및 보고 요구 사항과 관련된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여부
- 충전소에서 사용되는 지적 재산권 및 기술과 그러한 권리 및 기술의 보호 및 이전에 대한 유효성 확인
- 대상 비즈니스의 재무 성과 및 예측과 거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잠재적 시너지 및 효율성 평가
- 전기차 충전 부문의 시장 조건 및 경쟁과 대상 비즈니스의 미래 성장 및 발전에 대한 잠재적 기회 및 도전 과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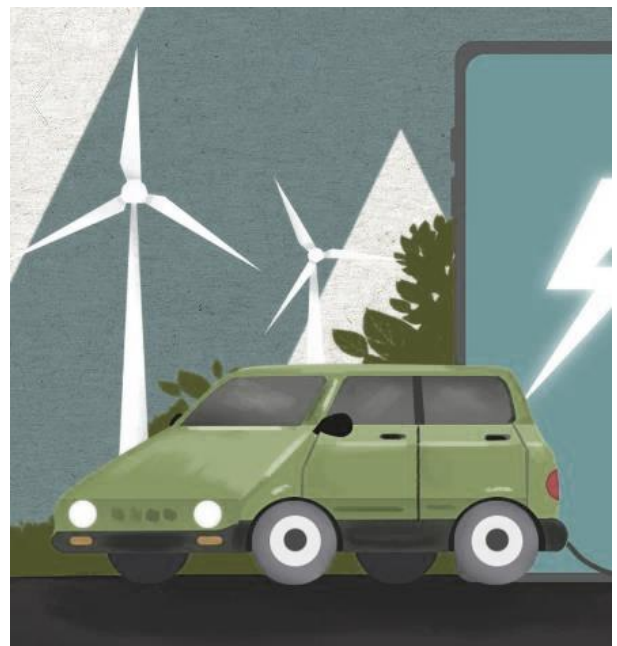
거래 구조 및 문서화

EV 충전소와 관련된 M&A 거래의 구조 및 문서요건들은 각 거래의 성격, 범위 및 목표와 당사자의 선호도 및 기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 매매, 자산 매매, 합병, 합작 투자 또는 전략적 제휴와 같은 가장 적합한 거래 구조 선택 및 그러한 선택의 세금 및 회계적 영향
- 충전소와 관련된 위험 및 책임 분배 및 당사자의 적절한 진술, 보증, 배상 및 계약 조항 제공
- 충전소, 토지 임대, 전기 공급 계약, 고객 계약, 지적 재산권 및 기술과 같은 대상 비즈니스의 주요 자산 및 권리 식별 및 보호
- 관련 당국 및 제3자,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 전기 공급자, 네트워크 운영자, 규제 기관 및 대주단의 인허가 취득
- 대상 비즈니스의 사후 통합, 전환, 관리 그리고 합의된 사업계획 및 전략 구현

결론

EV충전소와 관련된 M&A 거래는 관련 당사자 및 UAE의 운송 및 에너지 부문의 개발 및 변혁을 위한 중요한 기회와 도전과제를 제공하기에, 관련 당사자는 단순한 금융거래가 아닌, 전략적 거래임을 인지하고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고려 사항 및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Opportunities for Market Access for Life Sciences Companies in the UAE

본 고에서는 의약품의 수입, 유통, 가격 책정 등을 규제하는 UAE의 법률과 산업 부문의 최근 동향을 간략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UAE 에서 의료제품을 규제하는 법률은 의약품, 제약업계 전문가 및 제약회사 설립에 관한 연방법 2019 제 8호 (이하 "약사법")입니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수출입, 유통, 보관, 제조, 가격 책정, 광고 및 판촉, 임상 및 임상 시험, 안전 보고 및 제품 회수 등의 부문을 규제할 뿐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역내의 모든 의약품과 약사 등 제약업계 전문가, 그리고 제약회사와 약국의 설립을 규제합니다.

최근 개정된 2023년 법률 제11호 개정법(이하 "신규 약사법")을 통해 의약품 수입하는 회사에 대한 신규 요건이 도입되었습니다. 신규 요건은 마케팅 허가를 받은자(Marketing Authorisation Holder, 이하 "MAH")가 의약품 수입해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려면 두 곳 이상의 의약품 사업장을 보유해야 하고, 의약품 수입을 위해서는 최소한 두 곳의 의약품 사업장을 지정해야 하며, 의약품 유통을 위해서는 한 곳 이상의 사업장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신규 요건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UAE 보건예방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이하 "MOHAP")가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 규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의료제품을 규제하는 주무부처에 대한 동향으로 주목할 사항은 UAE는 공공보건 수준을 높이고, UAE 를 제약 및 의료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발돋움하고자 최근 UAE 의약품 안전국 (UAE Drug Authority) 을 설립했습니다. 재정 및 행정적 독립성을 갖는 연방기관인 의약품안전국은 아부다비에 소재하며, 역내의 의약품을 규제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연구 기관을 승인과 설립을 주관하고, 안전관리를 총괄합니다.

UAE에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수입, 등록 및 유통하려면 UAE에 설립된 법인을 MOHAP에 등록하고, 의료기기 및 의약품 유통이 가능한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marketing office licence"라고 알려져있는 마케팅 허가의 취득없이 의료제품 유통은 불가능합니다. 의료제품 유통사는 현지에서 MAH를 보유해야 하며, 이는 유통하는 각 제품의 MOHAP 등록에 반영됩니다. 의약품 유통 라이선스의 취득은 약 6개월이 소요되는 과정으로 MOHAP이 주관합니다. 그밖에, 의약품의 수출입, 보관 및 유통을 위해서는 의료 참고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의약품 유통 라이선스는 UAE 국민이 지분 전체를 갖는 기업만이 취득할 수 있었고, 이후 UAE 국민이 51%의 지분을 갖는 기업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해왔으나, 최근 UAE 회사법 개정과 더불어 MOHAP은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까지 동 라이선스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고 이는 역내와 자유무역지역에 설립한 기업에 모두 적용됩니다. UAE로의 진출을 검토해온 생명과학부문의 기업은 UAE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인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연락사무소, 마케팅 사무소, 유통회사 설립을 검토 추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MOHAP는 UAE로 더 많은 제조기업을 유치하고자 외국 생산자가 UAE에 제조시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특히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시설 설립에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앞서 언급한 신규 약사법에 도입된 신규 요건은 의료제품의 수입과 유통을 위해서는 UAE에 두 개의 회사를 두어, 한 곳은 수입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다른 한 곳은 유통을 하도록 잠정적으로 규제합니다. MOHAP에 기등록되어 유통되고 있는 기존 제품은 기존의 유통업체와의 거래가 종료되지 않는 한 새로운 기업이 기등록된 제품을 유통할 수 없습니다.

MOHAP 은 의료제품의 가격 책정을 규제하는 주무부처로, 제품의 최고가는 효과성, 안전성 및 품질 기준을 증명하는 연구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MOHAP 이 최고가를 책정한 의료제품은 더 높은 가격으로는 판매할 수 없으며,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MOHAP 이 책정한 가격보다 더 낮은 할인가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MOHAP이 승인한 가격표를 판매 및 배송 전에 의료제품의 외부 포장에 부착해야 합니다. MOHAP은 의료제품 가격책정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격책정지침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데, 동 지침은 다양한 범주의 의료제품에 대한 기준, 절차, 마진을 정할 뿐 아니라, 등록된 의료제품의 가격을 정기적으로 또는 예외적으로 조정 및 재설정하고 예외적인 케이스도 규제합니다.

의료제품 유통 시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관행은 가격 조정 기간 중에 가격을 조정하거나 인상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상당한 벌금 및 처벌이 따르는 행위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사법 제109조는 MOHAP이 책정한 의료제품 가격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AED 100,000의 벌금을 부과하며, 재범시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약 회사는 MOHAP 가격책정지침을 준수하고, 제품의 운송 및 수입 비용 변화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한 기준가를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UAE 의약품안전국이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의료제품 등록을 시작하면 가격책정지침이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제품의 가격책정의 변경은 다른 GCC 국가로 유통할 때 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GCC 지역 전체에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에게는 모니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UAE 생명과학 분야로 진출을 고려할 때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철저한 사전 시장 조사와 실사
- 현지 파트너, 주무당국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과의 관계
- 연방 수준 그리고 진출할 토후국 수준에서 부과하는 규제의 차이점 확인
- 규제 환경의 동향 파악
- UAE 정부 및 각 프리존이 제공하는 혜택과 인센티브 확인 등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Integrating ESG aspects in the KSA & UAE Shipping Sectors

해운 산업은 세계 무역의 물동량 기준 약 80%, 금액 기준 약 70%를 운송하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나 해운업은 기후 변화, 대기 질 악화, 해양 생태계 교란에 기여하는 온실가스 및 기타 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사고, 충돌 또는 불법 배출로 인한 기름 유출은 해양 생태계, 인간의 건강, 해안 지역 주민의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선박 평형수, 밸러스트 수, 하수, 쓰레기 등의 선박 배출은 오염물질, 병원균, 침입종을 유입시켜 수질과 해양 생물을 악화시킵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고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MARPOL) 및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BWM) 등 여러 협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론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와 같은 산유국에서 더욱 중요해졌으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환경적 책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시 속에서 해운 부문에서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술 및 관행을 향한 업계 전반의 전략적 변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운업계는 규제 당국, 고객, 이해관계자로부터 운영 관행을 개혁하라는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업계는 생태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채택하고 있습니다.

1) 대체 연료 및 친환경 기술 채택

지속 가능성을 향한 전환 과정에서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와 같은 대체 연료의 탐색과 풍력 및 배터리 기술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구적인 접근 방식은 해운업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유망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생산 확장성, 비용 효율성, 기존 인프라와의 호환성, 안전 문제 등의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2) 친환경 배송 경로, 운영 효율성 및 용량 최적화

이를 보완하는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친환경 운송 경로의 구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해운 CO2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유럽 컨테이너 항로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운 업계는 선박의 설계와 성능을 개선하고 선박의 효율을 높이고 배출량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선박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에는 디지털화, 선내 시스템, 선체 및 프로펠러 최적화, 속도 감소, 항로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또 다른 개선 사항으로는 선박의 컨테이너 용량을 늘려 운항 횟수와 화물 단위당 연료 소비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UAE와 KSA의 영향력: 해양 지속 가능성 촉진

1) COP28: 해양 지속가능성을 위한 동력

UAE가 주최한 COP28에서 해운 업계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치 있는 이니셔티브가 진행되어 이 분야에서 UAE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는 그린 해운 챌린지를 시작하는 플랫폼으로, 국가, 항만, 기업이 녹색

통로 구축부터 무공해 연료 통합에 이르기까지 해운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60개 이상의 발표를 했습니다. COP 28의 맥락에서 친환경 해운 이니셔티브의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글로벌 해운 리더들은 화석 연료 전용 신조 중단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IMO가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을 지지했습니다. 머스크, CMA CGM, MSC, Hapag-Lloyd, Wallenius Wilhelmsen이 지지한 이 선언은 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니셔티브는 해양 지속가능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COP28에서 이루어진 노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2) UAE 및 사우디 해운 부문의 ESG 이니셔티브

UAE와 사우디는 지속가능성, 혁신 및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해운 부문에 ESG 측면을 통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UAE는 글로벌 항만 수소 연합과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에 따라 해양 부문을 수소 유래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UAE Ministry of Energy and Infrastructure(MOEI)와 DNV는 2023년 7월 해양 산업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감축하는 'UAE Maritime Decarbonisation Centre'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DP World는 아시아 및 중동의 여러 항구와 Prince Rupert, Vancouver, Edmonton 등 캐나다 서부 해안을 연결하는 국제 친환경 해운 통로를 구축하기 위한 MoU를 승인했습니다. 이 양해각서에는 Transport Canada와 A.P. Moller Maersk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합니다.

사우디의 경우, 영국과 함께 Saudi Green Initiative 포럼에서 COP 28과 동시에 양해각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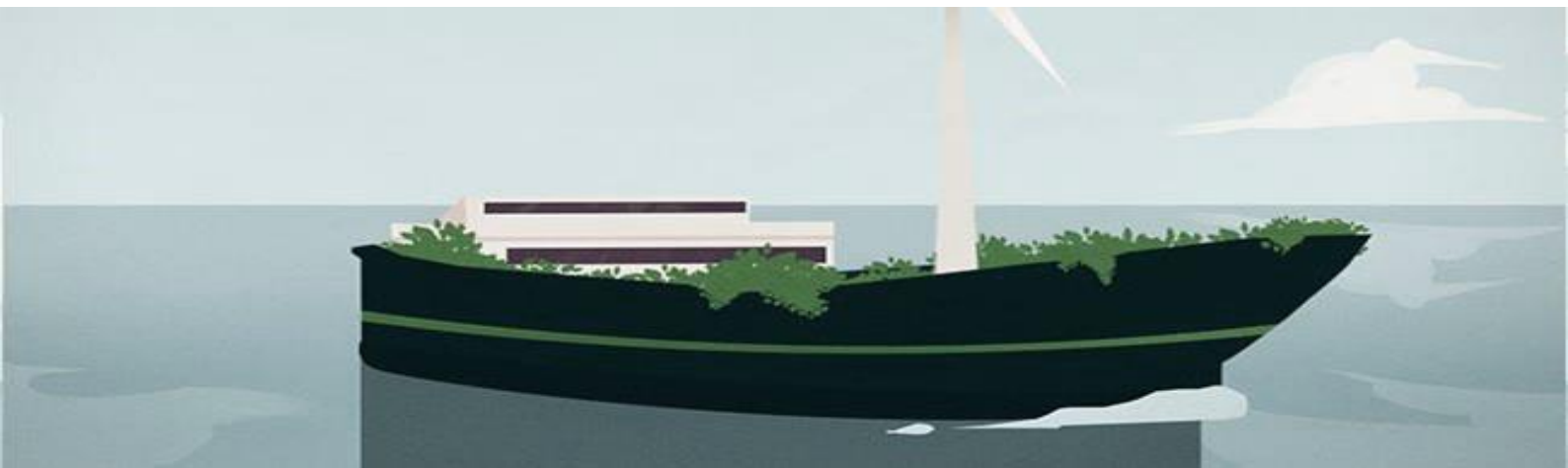
공식화했습니다. 이 양해각서는 해양 생물 다양성 증진, 오염 완화, 기후 변화 관련 과학 발전과 같은 주요 분야를 집중 조명하면서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우디는 2024~2025년 임기 동안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sation의 40개 이사국 지위를 성공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해상 운송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박 오염을 줄이며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기구에서 사우디의 존재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선박 재활용과 관련하여, Wreckdock Maritime은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해상 해체를 위한 국제 표준에 따라 사우디에 현대식 선박 재활용 시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이 시설은 유조선과 화물선을 포함하여 연간 48~52척의 수명이 다한 선박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억 달러가 투자되는 이 프로젝트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관행에 대한 약속을 강조합니다.

결론

해운 산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고 글로벌 지속가능성 의제에 부합하기 위해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UAE와 사우디는 이 과정에서 배출량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며 해양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해양 지속가능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UAE와 사우디의 리더십과 비전,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영향과 효과는 향후 몇 개월 및 몇 년 내에 평가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Judicial and Regulatory Landmarks Shaping Legal Practices

Landmark Dubai Court Decisions Signal Pro-Enforcement Stance for Foreign Judgments

알타미미는 최근 영국 고등법원 판결이 두바이에서 성공적으로 승인 및 집행되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해당 영국 고등법원 판결은 약식판결로, 두바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 영업일 만에 승인 및 집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두바이 법원은 기존에도 영국 법원과 UAE 법원 간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상호주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영국 법원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두바이 법원이 외국 법원의 판결, 특히 영국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획기적인 결정이 나오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 판례로는 영국 항소법원이 2021년 5월 두바이 법원 판결의 영국 내 승인 및 집행 가능성을 확인한 *Lenkor Energy Trading DMCC v Puri* [2020] EWHC 75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가 나온 뒤 UAE 법무부는 2022년 9월 발행한 회람에서, UAE 민사소송법에 따라 영국 판결이 UAE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상호주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두바이 대법원은 최근 캐나다 약식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외국 판결의 집행에 관한 두바이 법원의 판례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Landmark Legal Update: Commercial Licences Now Recognised as Attachable Assets in Debt Recovery

2024년 1월 31일, 두바이 대법원 총회는 2024년 대법원 판례 제1호(Cassation No. 1 of 2024) 사건에서 상업 라이선스가 부채 회수를 위한 압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법적 원칙을 확립한 판결을 내렸습니다(이하 "총회 판결"). 이 판결은 UAE에서 채권자의 권리 집행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입니다.

총회 판결은 민사거래법 제391조(Article 391 of the Civil Transactions Law) 및 민사절차법 제42호 2022년 연방법령(Federal Decree-Law No. 42 of 2022) 제247조(Article 247 of Federal Decree-Law No. 42 of 2022)에 따라,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그의 의무 이행을 위한 담보로 설정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권리에 대한 담보의 손실을 우려할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압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 민사절차법 제242조(Article 242 of Federal Decree-Law No. 42 of 2022) 또는 기타 특별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자산은 제외됩니다.

또한, 총회 판결은 담보가 설정될 수 있는 자산은 판매 가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거래법 제98조 (Article 98 of the Civil Transactions Law)에 따라 비거래성 자산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 라이선스가 회사의 물질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무형 자산으로서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업 라이선스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무형 자산이 압류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절차법 제242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적용됩니다.

이번 총회 판결은 이전에 2018년 대법원 판례 제122호 (Cassation No. 122 of 2018)에서 상업 라이선스가 압류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고 판단했던 법리를 폐기하고, 회사의 상업 라이선스 및 모든 무형 자산이 비거래성 자산이 아닌 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부채 회수 사건에서 자산 압류의 범위를 확장시켜, 향후 법적 해석 및 채권자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arbitrateAD Releases Arbitration Rules for Abu Dhab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올해 초 아부다비 상공회의소(Abu Dhabi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이하 "ADCCI")는 아부다비 국제중재센터(Abu Dhab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ADIAC")의 출범을 발표하였습니다. arbitrateAD 라고도 불리는 아부다비 국제중재센터는 지난 30년 간 아부다비의 중재법원 역할을 담당해 온 아부다비 조정 및 중재 센터(Abu Dhabi Commerc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entre, 이하 "ADCCAC")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2013 ADCCAC 중재규칙을 대체하는 ADIAC 중재규칙(이하 "2024 중재규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 1일 이후 등록된 사건은 2024년 중재규칙의 적용을 받고, 그 전에 제출되어 보류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2013 ADCCAC 중재규칙이 적용됩니다.

2024 중재규칙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 **적용범위:** 2024 중재규칙 제1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ADIAC 또는 ADCCI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동의한 경우 2024 중재규칙이 적용됩니다.
- **중재 법원의 역할:** ADIAC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ADCCI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독립된 중재 법원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2024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중재를 감독하며, 중재인 임명과 관련된 분쟁 및 중재 재판부 구성 전 중재 합의 존부에 관한 분쟁 등을 다룹니다.
- **절차 개시:** 2024 중재규칙은 간소화된 중재 개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 요청서를 제출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중재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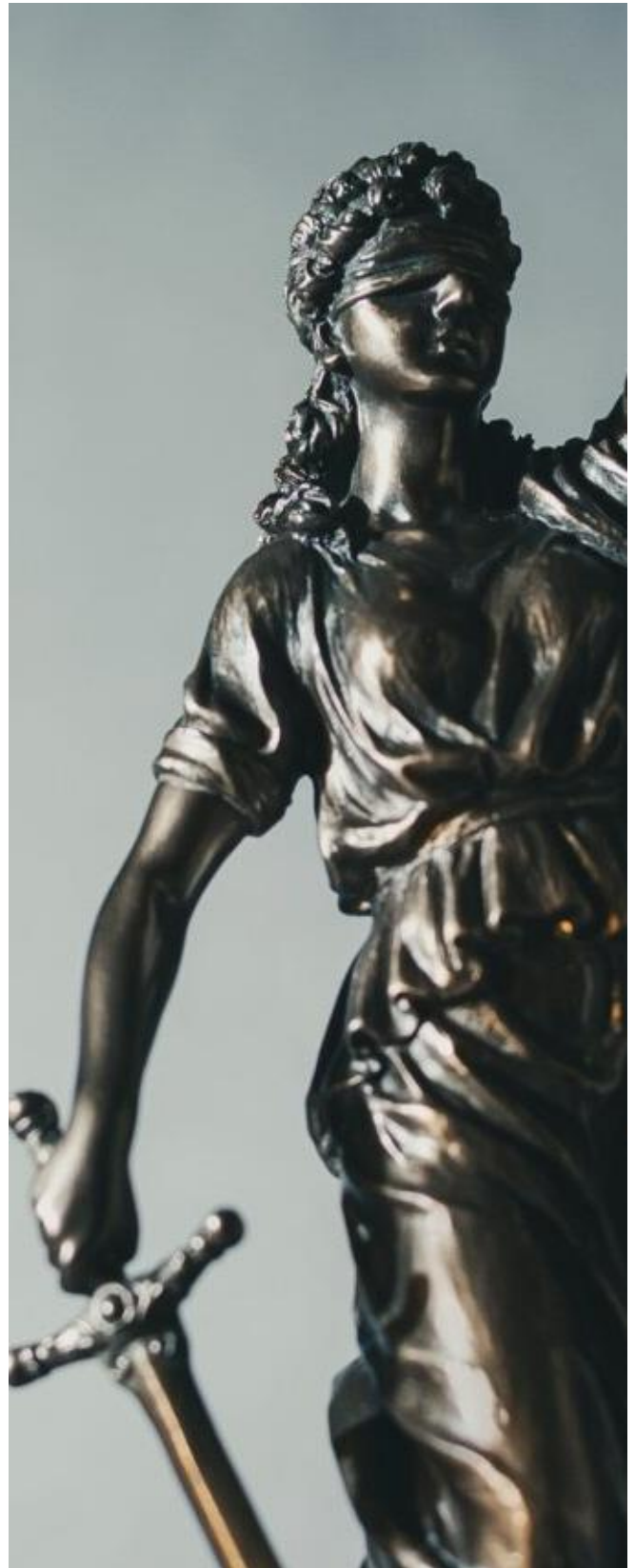
- **다수당사자, 다중 계약 사건:** 2013 ADCCAC 중재규칙과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2024 중재규칙은 다수당사자 및 다중 계약에 대한 중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수 당사자가 중재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병합되는 당사자에 대한 중재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중 계약이 문제되는 경우, 법원은 중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단일 중재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중재 재판부:** 중재인 수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따르고,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ADIAC가 단일 중재인을 임명합니다. 다만 중재 법원은 3명의 중재인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3명의 중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일 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은 당사자와 다른 국적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 **중재지 및 언어:** 2024 중재규칙 제22조는 중재지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ADGM에서 중재가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언어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구성될 때까지 사건 관리 사무국(Case Management Office)에서 언어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재 절차:** 2024 중재규칙에서 다루고 있는 변론, 증거 교환, 심리의 진행 등 중재 절차에 관한 규정은 DIAC, ICC, SIAC 등 다른 중재법원의 규칙과 일치합니다.

결론적으로, 2024 중재규칙은 아부다비 및 UAE 중재에 있어 중요한 발전을 시사합니다. 2024 중재규칙은 청구의 객관적, 주관적 병합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에서 ADCCAC 중재규칙과 차별될 뿐만 아니라 UAE의 고유한 중재 환경을 고려하여 중재 절차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2024 중재규칙이 향후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나 UAE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으로서 아부다비 내 현대적인 중재센터와 중재규칙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Al Tamimi & Company News

Tamimi News

[주요 업무 사례] 알타미미, Microsoft가 AI 개발을 위해 단행한 15억 달러(한화 약 2조 원) 투자 자문

알타미미는 Microsoft가 AI 개발과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부다비의 *G42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건에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알타미미의 여러 팀들이 협업하여 기업 구조, 지식 재산권, 노무, 규제, ESG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법률 실사를 수행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관련한 모든 신고 요건, 승인, 반경쟁 제약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해 현지 법률의 측면에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G42는 2018년에 무바달라의 투자로 아부다비 정부가 설립한 첨단 기술 그룹으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개발과 활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사례] 알타미미, 3사 컨소시엄에 아부다비 EWEC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 자문

알타미미는 아부다비의 EWEC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를 수주한 3사 컨소시엄(Marubeni Corporation, Hitachi Zosen Inova AG, Japan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Corporation)에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최대 규모로, 연간 90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8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의 건설 및 개발을 포함합니다.

[출판물] 알타미미, ESG 보고서 발간

지속 가능한 가치를 위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ment, 환경, 사회, 지배 구조) 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온 알타미미는 2023년의 ESG 관련 활동, 성과 및 목표를 망라하는 [제1호 ESG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동 보고서는 GRI Standards, IFRS, SASB, UN Global Compact 등 국제 표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ESG를 향한 알타미미의 지속적인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신규 영입] 중재팀 총괄 파트너 Paul Taylor 변호사, 아부다비사무소 기업팀 파트너 Henry Storrar 변호사

알타미미는 중재팀을 총괄할 Paul Taylor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20여 년 인프라, 에너지 및 건설 분야의 복잡한 분쟁에서 기업을 대리해온 Paul 변호사는 두바이 사무소에 상주하며, 한국 기업의 분쟁을 대리한 경험도 또한 풍부합니다. 복잡한 국제 M&A 거래들을 성공적으로 자문한 경험이 있는 Henry Storrar 파트너 변호사가 아부다비 사무소의 기업팀으로 합류했습니다. Paul 변호사와 Henry 변호사의 합류로 알타미미 분쟁 해결팀과 기업팀의 역량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L TAMIMI & CO.

“I am delighted to join Al Tamimi & Company, a firm known for its outstanding reputation and market-leading arbitration practice.

I look forward to collaborating with the talented team and contributing to the firm's continued success and growth in the region.

Paul Taylor
Partner, Regional
Head of Arbitration

[출판물] 알타미미, Family Business & Private Wealth팀 “Legacy” 발간

알타미미의 Family Business & Private Wealth팀은 중동 GDP의 60%, 노동력의 80% 등 중동 지역 경제의 상당한 부문을 차지하는 Family Business와 Private Wealth 부문의 자산 보호, 승계 계획, 분쟁 해결 등 다양한 이슈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출판물, [Legacy](#)를 발간했습니다.

[인터뷰] Omar 변호사, OBC “뉴스 오늘” 인터뷰

Omar 변호사는 [OBS 뉴스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의 투자환경과 외국 기업 유치 현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DIFC에 입주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독립적인 법제 환경,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하지원 변호사 이데일리와의 인터뷰

알타미미 하지원 변호사는 [이데일리의 인터뷰](#)에서 국내 상장사들의 중동 투자유치 방안으로 교차상장(dual listing)을 통한 자금조달을 소개하며 국내 기업들의 중동 진출과 사업 모델의 다양화와 현지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하지원 변호사 Asian Legal Business 7월호 인터뷰

알타미미 한국팀의 하지원 변호사는 Asian Legal Business 7월 호에 게재된 “[Korea on the Horizon](#)”을 통해, 지난 5월 말 한국과 UAE가 체결한 한.UAE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이 양국의 경제협력 및 법률 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강연] 하지원 변호사 메디컬 코리아 2024 컨퍼런스에서 강연

하지원 변호사는 3월 14일과 15일 양일 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 주관한 메디컬 코리아 2024 컨퍼런스에서 "한국 의료기관의 중동 진출 전략과 주요 법률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진출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설명했으며, 한국 의료기관이 관심을 두고 있는 원격 의료서비스를 위한 법적 요건도 다루어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출판물] 알타미미 한국팀 신규 분기 출판물 발간

알타미미 한국팀은 분기별 뉴스레터 “Tamimi Knowledge: 중동 법률 업데이트”를 발행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중동 국가들의 주요 법제 개혁 및 규제 기관의 동향, 신규 법률 및 규제 사항 등을 선별하고, 현지 법원에서 결정된 최신 법률 판례들을 정리하여 소개해드립니다.



Korea Group Deals and cases

사우디 세무 소송 승소

송형민 변호사와 알타미미 조세팀 및 송무팀은 2024년 7월 국내 건설회사의 사우디 지사를 대리한 사우디 국세청의 2015년도 간주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전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알타미미 사우디 사무소는 전문 조세팀과 송무팀의 협력을 통해 국내회사를 대리한 8건의 대규모 조세소송에서 전부 승소 혹은 대부분의 금액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도 5건의 조세 및 관세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A발전사의 중동내 프로젝트 지주사 설립 및 운영 관련 자문

하지원 변호사와 알타미미의 기업자문팀은 국내 발전사가 오만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지역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할 역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또 현지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자사의 UAE 소재 사무소 및 운영사멤버간 설립한 합작법인의 운영 및 직원 파견과 관련하여 현지법상 고려해야 할 절차와 준비사항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발전사 및 에너지기업들이 중동 현지사업들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사로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DIFC 와 ADGM 등 UAE 의 금융프리존에 중동국가로의 투자확장과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목표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원 변호사와 알타미미의 전문팀은 이러한 역외관할의 계획과 설립단계에서부터 깊숙히 관여해 온 독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관할과 운영형태에 대한 전문적인 전략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s) 설립 업무

송형민 변호사와 알타미미 기업팀은 국내 메이저 건설사의 지역본부 설립 업무를 자문하였습니다.

지역본부 규정이 올해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사우디에 중동/북아프리카의 지역본부를 두고 있지 않은 업체들은 원칙적으로 사우디 정부계약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정부주도 기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에 중동/북아프리카의 지역본부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한국 업체들이 지역본부 설립 업무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국내 국책은행에 Netting Opinion 및 Collateral Opinion 제공

하지원 변호사와 알타미미 각국의 금융팀은 국내 국책은행의 요청으로 ISDA 가 커버하고 있지 않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에 대하여 각국의 도산법제에 비추어 일괄청산 네팅(Close-out Netting)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Netting Opinion 및 Collateral Opinion 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 설계/감리 업체의 기업합병 자문 업무

송형민 변호사와 알타미미 기업팀은 2024년 7월 국내 설계 및 감리업체의 기업합병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관계사간 합병에 자문한 것으로, 알타미미 기업팀은 전략 및 거래구조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관여하여 주주들의 결의서 및 각종 필요서류들의 작성 및 준비, 기업결합신고, 합병공고, 관할관청의 허가, 피흡수법인의 지사전환 및 등록말소 등 합병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대리하였습니다.

한국 IT 업체의 지사 설립 및 제조업체들의 자회사 설립 업무

송형민 변호사와 알타미미 기업팀은 2024년 한국 IT 회사의 사우디 지사 설립 및 한국 제조업체들의 자회사 설립, 비자 발행, 사우디 국세청 등 관공서 등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현재도 여러 업체들의 설립 업무를 대행하거나 설립과 관련된 회사내부 의사결정 단계에서 핵심적인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전 2030에 기반하여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사우디제이션 정책에 따라 외국기업들의 사우디내 법인/지사 설립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업체들의 설립 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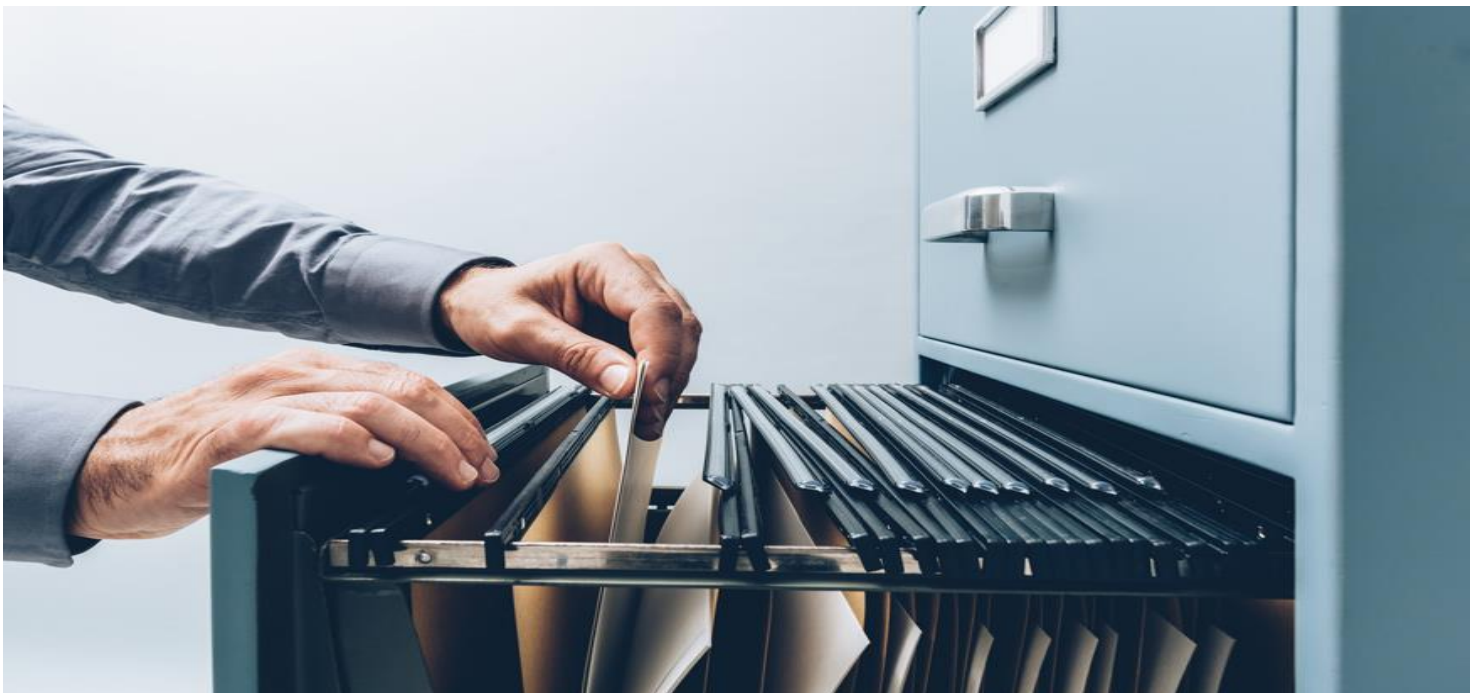
국내 B 에너지사의 중동사업 총괄지사 설립

하지원 변호사와 알타미미 기업자문팀은 국내 B에너지 지주사가 기존의 원유사업 외에도 UAE 와 중동내 수소, 암모니아 등 청정 미래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지역본부를 아부다비에 설립하는데 자문하였습니다.

UAE 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를 통해 에너지 및 산업분야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기업들의 사업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알타미미 한국팀은 관련 업체들의 직접적인 현지 진출시의 법적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C식품사의 UAE 내 상표권침해 사례 자문

하지원 변호사와 알타미미의 지적재산권팀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Food 열풍에 편승하여 국내 C식품사의 인기제품을 모방한 가품이 UAE 에 대규모로 유통된 사건과 관련하여,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자문과 함께 가능한 행정조치와 형사 고발 등의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고객사 및 업계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였고, 유통업체 스스로 가품을 회수하고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Tamimi Insights

01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업결합심사 제도 변화 (2024년 5월)

기업결합 신고 기준금액, 행정 비용 등 변경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업결합심사(merger control)의 주요 내용을 논의합니다. 사우디에서 기업 인수합병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이해하는 개정된 요건들을 설명드립니다.



02

UAE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규제 (2024년 6월)

국내 블록체인 및 웹3업체들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 수행 시 반드시 유념해야 할 UAE의 관할별 규제 당국 및 라이선스 요건 등을 설명드리는 짧은 강연 영상입니다.

03

자연재해가 건설 및 부동산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2024년 6월)

2024년 4월, 두바이에 내린 폭우로 인해 건설 및 부동산 산업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알타미미의 건설 부동산팀과 보험팀의 변호사들은 자연 재해가 UAE의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며, 법적 영향, 위험 완화 전략, 그리고 손해배상보험 등의 이슈에 대해 설명하는 세션을 가졌습니다.



Tamimi Knowledge

Doing Business Series

알타미미의 Doing Business Guide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바레인, 이집트, 오만, UAE 편이 발간되었습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요르단, 모로코 편도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Doing Business Guide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Tamimi Talks

Tamimi Talks 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최대 로펌인 알타미미의 각 분야 법률전문가들이 각 사법권의 법률 업데이트와 산업부문의 동향을 전달하는 팟캐스트 시리즈입니다.

팟캐스트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오.



Law Update

Law Update 는 클라이언트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법률 부문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알타미미의 월간 출판물입니다. 월별 주제에 따라 관련 산업 동향, 법률 뉴스, 입법 및 규제 개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지난 Law Update 시리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USINESS DEVELOPMENT
& MARKETING LEAD - KOREA GROUP**

Soyeh Ki

s.ki@tamimi.com

알타미미 한국팀의 이벤트 초대장, 법률 자료 등의 수신을 희망하시면 연락주십시오.



Korea Group - Al Tamimi & Company



@AlTamimiCompany



Al Tamimi & Company



التميمي و شركاه
AL TAMIMI & CO.

www.tamimi.com

